# 인쇄하기

무방문, 무서류 간편 대출 가능

영업점

# KB 민간 신축 매입약정 주택 건설자금대출



가입대상

개인사업자&법인

## 상품안내

상품특징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 사업자를 위한 전용상품

대출신청자격

-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민간 신축 매입약정'이 체결된 민간 사업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도심주택특약보증서를 발급 받은 당행 기업신용등급 BB등급(소매형SOHO 6등급C)이상 기업을 대출대상으로 한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등록정보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 또는 일부 업종의 경우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

- 매입주택에 대한 총 사업비의 90% 이내(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

(단, 투기과열지구는 매입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80~90%, 그 외 지역 70%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주택운전자금대출

ㅇ 일시상환식: 신용보증서(분할보증서) 보증기간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주택운전자금대출

ㅇ 일시상환식: 신용보증서(분할보증서) 보증기간 이내

# 금리 및 이율

적용이율 결정방법

- 대출금리는 아래 '협약금리'를 적용한다. (금리변동주기: 3개월, 6개월)
- ㅇ 협약금리

□ 보증비율 100%: MOR+2.60%p

(대출금리 예시) 중소법인, BBB 등급, 주택운전자금, 대출기간 2년, 6개월 변동금리, 보증비율100%

(2024.10.24 기준) o 기준금리: 연 3.35% o 가산금리: 연 2.60%p

- ㅇ 적용금리: 연 5.95%
- \* 위 금리는 산출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금리는 담당자와 상담하시기바랍니다.
- · 기준금리 : 금융투자협회(www.kofiabond.or.kr) 공시기준으로 전주 마지막 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 \* 3개월단위 : CD91일문 유통수익률 \* 6개월 단위 이상 : 금융채AAA등급 채권시장수익률

#### 이자계산방법

-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대출은 이를 365(윤년인 경우 366)로, 월단위 계산대출은 12로 나누어 계산

#### 원리금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대출 약정 시 지정한 수납계좌(취급점 부점명의 통장)에 매입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 이자는 매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원금 또는 이자 상환관련 제한

- 매입기관으로부터 입금된 매입대금으로 대출금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단, 여유자금으로 상환 시에는 중도 상환수수료 발생)
-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조건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매입기관으로부터 입금 된 매입대금으로 대출금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계산식: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 1. 중도상환수수료율
- 가. 담보종류 및 금리주기별 수수료
- (1) 부동산담보대출(고정금리): 1.40%
- (2) 부동산담보대출(변동금리): 1.20%
- (3) 신용대출(고정금리): 1.10%
- (4) 신용대출(변동금리): 1.00%
- \*고정금리대출: 대출 실행시 결정한 금리를 대출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출
- 2. 담보종류 구분
- 가. 부동산담보대출의 정의
- (1) 부동산 또는 유형·재고자산을 담보로 취득한 대출
- (2) 대출 기표시 은행의 부대비용 지출이 있거나 향후 지출대상 대출(후취담보 취득 등)
- 나. 신용대출의 정의: 위의 부동산담보대출 이외의 대출
- 3. 수수료 적용 기준
- 신규/대환/재대출 약정시점 기준으로 적용하며, 금리 및 담보 변경에 따라 변경되지 않음.
- 4.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경과일수
-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적용"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과한 사항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일시상환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연3%]로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로 합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연 2%를 더한 율을 적용합니다.

단,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기준,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의 만기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여신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 수수료 등 부대비용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 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각각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각각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보증료: 도시주택금융공사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이자부과시기

- 대출이자는 대출약정시 정한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에 따라 부과됩니다.[예시) 매월 (00)일에 지급합니다]

## 이용안내

#### 담보 및 보증 제공여부

- 도시주택보증공사의 '도심주택특약보증서'(서면보증서)만 담보 가능

# 유의사항 및 기타

# 고객에게 발생할 수있는 불이익

- 해당사항 없음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개시일 : 2024.10.31 - 종료일 : 2026.09.30

## 만기 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단,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개인 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기준,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의 만기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여신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사항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 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거래조건 등은 영업점 상담 후 최종 결정됩니다.

####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 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 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말소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 고객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 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되어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상승

또는 하락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개인신용평점 상승,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 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 취급할 경우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 ☎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 준법감시인심의필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968-6호(2024.10.31)

(유효기간: 2024.10.31~2026.09.30)